- (아) "런너 스터드 트랙(Runner Stud Track)" 이라 함은 경량 강재 밑막이 및 웃막이(KSD-3609)를 말한다.
- (자) "스터드(Stud)" 라 함은 경량 강제 샛기둥(KSD-3609)을 말한다.
- (차) "스페이서(Spacer)" 라 함은 Stud 고정용(밀림방지) Clip을 말한다.
- (카) "코너비드(Corner Bead)" 라 함은 석고판 코너 마감재를 말한다.
- (타) "내화 실란트(Sealant)" 라 함은 조절 줄눈 및 벽 접합부위 마감용 재료로 내화 성능을 가지는 실란트를 말한다.
- 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 같은 법 시행령, 같은 법 시행규칙, 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, 고용노동부 고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4. 안전·보건작업계획 수립

- (1) 내장공사 작업단계별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, 유해·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 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
- (2) 작업의 높이에 따른 작업발판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3) 전기기계 · 기구 사용을 위한 가설전기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4) 배전반 및 분전반의 접지 및 누전차단기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5) 자재운반을 위한 양중 작업 및 소운반 작업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.
- (6) 각 작업 단위별 필요한 안전시설물 설치순서와 방법, 시기 등을 정하여야 한다.
- (7) 안전보호구 지급계획(안전모, 안전대, 안전화, 방진마스크, 보안면, 귀마개 등)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8)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2시간 연속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합한 휴식시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9)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고, 마감 재료에 따른 유해·위험성을 검토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